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26일 18시 17분



목차

목차	2
등록현황	3
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3

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2014.04.17 조회수 534 등록자 박종열

관리번호	전라남도 여수시-2013-009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조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유형	3호 - 금지(부작위)
법령공표일	누락규제
존속기한	2001-10-13
규제시행/폐지일	2001-10-13
규제내용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06. 5. 18, 2012. 6. 29) 2.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06. 5. 18, 2012. 6. 29)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목록

이전글

전라남도 여수시-2013-0094

다음글

전라남도 여수시-2013-0096

Yeosu Web Contents

